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관련 다빈도 Q&A

장기요양 제도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참여 안내에 따른 다빈도 Q&A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참고하시고 효과적인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 .

<Q1. 보수교육 대상>

- ☐ 장기요양기관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교육 대상이 됩니까?
- ☐ 가족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 대상이 됩니까?

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시범운영으로 시범운영 지역인 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로 되어 있습니다.

요양보호사 이외 직종 근무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가족요양보호사도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이면 교육대상입니다.

<Q2. 보수교육 의무여부>

- 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?
- 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?,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☐ 이번은 시범운영이지만, '24년 보수교육이 도입이 되면 교육은 의무인가요?

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(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)개정('23.8.8.공포, '24.1.1.시행)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도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. 보수교육 시범운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, 교육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. '23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는 '24~'25년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.

보수교육은 자격취득자가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받는 교육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.

<Q3. 교육비용>

- 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센터장이 다 내렸는데, 보수교육은 왜 교육생이 돈을 내야합니까?

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주 위탁 교육입니다. 전체 교육비용 36,110원 중 50%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, 50%는 사업주(장기요양기관장)가 부담하여 실시한 교육입니다.

타 직종(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...)의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사업주 위탁훈련을 통해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.

<Q4. 근로인정여부>

- 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근무시간 인정이 되나요?
☐ 온라인교육시간도 근무시간 인정이 되나요?

시설급여, 주야간보호 등 월 기준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요양보호사는 집합 보수교육 이수 시, 실제 소요한 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.

방문요양·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과 무관하여 근무시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
온라인 교육시간은 근무시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
※ 월 기준 근무시간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에 근거함.

<Q5. 보수교육급여비용>

- 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급여비용 지급이 되나요?

보수교육은 자격취득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, 기술·기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제공, 보충하는 교육으로서, 교육받는 수강생이 교육비용을 내야 합니다.

현재,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